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가단14970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3. D

4. E

피고들 소송대리인 F

변 론 종 결 2023. 6. 23.

판 결 선 고 2023. 7. 21.

주 문

1. F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4. 접수 제957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2. 접수 제69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F은 2017. 2. 8.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로부터 500만 원을 이율 연 27.9%로 정하여 대출을 받았다가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였고, G는 2018. 10. 26. 원고에게 F에 대한 위 채권을 양도하면서 F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F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차전46418)을 신청하여 2019. 4. 29. “F은 원고에게 5,972,243원 및 그 중 4,241,15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9. 5. 17.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H의 소유였다가 H이 2016. 6. 29. 사망하면서 자녀인 F과 피고 C, D, E에게 각 1/4 지분씩 상속되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각 1/4지분씩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F 지분(1/4 지분)에 관하여 2017. 12. 4. F의 아들인 피고 B에게 같은 일자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B의 지분에 관하여 2018. 10. 22. 피고 C, D, E에게 각 1/12 지분씩 2018. 9.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F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고, 소극재산으로 I은행, J카드, K 등에게 원금 합계 약 31,060,000원의 채무와 원고에게 원금 4,241,153원의 채무가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L,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F에 대한 양수금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존재하였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된다(피고들은 F이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일부 변제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F이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증여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의 부족 내지 상실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앞서 본 F의 재산 상태에 비추어 볼 때, F은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여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채무자인 F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B, 전득자인 피고 C, D, E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2) 피고들은, F이 거주하고 있던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아들인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C, D, E 역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피고들이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는바(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선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물반환으로써 피고 B은 F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12. 4. 접수 제9573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C, D, E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0. 22. 접수 제6946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동연

별지

1. 서울 중랑구 M 대 93.9㎡

2. 서울 중랑구 M

[도로명주소] 서울 중랑구 N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2층 다가구용 단독주택(4가구)

1층 45.50㎡

2층 47.57㎡,

지층 56.41㎡. 끝.

